

# 신용정보활용체제

나우아이비캐피탈(주)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□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

### [이용 목적]

- 금융거래(투·융자, 펀드 출자, 유가증권 매매, 투자기업 사후관리) 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
- 금융거래 관계의 유지·이행·관리·개선
-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
- 법령상 의무이행
- 리스크 관리

### [신용정보의 종류]

- 개인고유식별정보
  -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개인일반정보
  - 성명, 영문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휴대폰/자택), 자택주소, 이메일주소, 국적, 성별
- 신용능력정보(여신 및 투자 거래에 한정)
  - 직업정보, 직장정보, 소득정보, 재산정보, 예상거래금액
- 기타 정보 : 거래 목적, 거래 자금의 원천 및 출처

## □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

-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
 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한국신용정보원
  -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 요구하는 공공기관
    -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, 법원, 검찰청 등 수사기관, 조세관청 등
  - 펀드 출자·관리·운용기관
    -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(주), 한국벤처투자(주), 농업정책금융보험원

-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
  - 관계 법령에 근거한 업무 수행
  -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  - 투자기업 및 펀드의 운용과 사후관리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
  - 개인 고유식별정보 및 일반정보, 금융거래내역 등 신용정보

## □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·이용됩니다.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관리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-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됩니다.
-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의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.

## □ 신용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
- 개인정보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며,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책임 하에 수행됩니다.
- 파기 사유가 발생한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, 저장된 개인정보는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파일 삭제 또는 저장 매체 포맷 방식 등으로 파기합니다.
- 문서로 출력된 개인정보의 경우 소각 또는 분쇄의 방식으로 파기합니다.

## □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종류 및 행사 방법

- 고객은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신용정보법」이라 한다)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은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.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[www.nauib.com](http://www.nauib.com))를 이용하거나, 당사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◆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(「신용정보법」제33조의2)

- 고객은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(고객) 및 신용정보관리회사,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금융기관,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◆ **신용정보 이용·제공 사실의 조회·통지 요구권**(「신용정보법」제35조)

- 고객은 최근 3년간 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회사가 내부 경영관리 목적,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◆ **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**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)

-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,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·주소·연락처, 신용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을 거절, 중지하도록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◆ **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 권리**(「신용정보법」제36조의2)

-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의 상거래관계 설정,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, 자동화평가의 결과, 주요 기준, 기초 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 
-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◆ **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한 내용 철회권**(신용정보법」제37조)

- 고객은 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어려워지거나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
◆ **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**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)

- 고객은 본인의 실명확인을 통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언제든지 교부 또는 열람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서면,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.  
- 열람한 고객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고객은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정정 조치한 후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7일 이내 알려야 하며, 해당 고객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◆ **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**(「신용정보법」제 38조의3)

- 고객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정보법

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※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삭제 요구 가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: 5년

2. 위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 : 3개월

-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삭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회사는 고객의 삭제 요구가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는 등 관리를 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#### 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

- ◆ 고객은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
-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애로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□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에 관한 사항

- 소 속 : 준법감시인
- 직 책 : 전문위원
- 성 명 : 백 의 종
- 연락처 : 02-565-6234
- 이메일 : pej0826@nauib.com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골든타워 11층 나우아이비캐피탈(주)